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제공시간 제한 세분화 등 >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74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 (안 제21조의2)	2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제공시간 제한 세분화 등 (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6
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신탁(안 제25조의2)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12. 13.

다. 회 부 일: 2024.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 (안 제21조의2)

가. 개정안 요지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함(안 제21조의2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 사항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u>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 밖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u>

	<u>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19조¹⁾는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21조²⁾은 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규정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들이 일반적인 성인과 비교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이나 학습권 등 기본권의 침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규정의 내용이 선언적인 사항에 그치는 측면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 등의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 제공 과정에서 건강 악화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권 보호, 특히 ‘건강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업계**³⁾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고, 인과관계 해석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3) 관련 협·단체의 상세 의견은 [참고1] 자료 참조

-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특정 직업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 등 제기될 소지가 있음.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1) 현행 타법령⁴⁾에서 청소년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국가 등이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이미 시행 중이고, (2) 특정인에게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사 입법례⁵⁾에서는 지원의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3) 본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유사 입법례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와 달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에 국가 등이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하면**,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관련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원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본권 보장 강화 필요성과 위 규정 신설에 따른 사업자·예술인 간 분쟁 발생 가능성 및 국가 등의 재정지원 관련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건강검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조문은 [참고2] 자료 참조

5)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및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조문은 [참고3] 자료 참조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제공시간 제한 세분화 등 (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현재 ‘15세’를 기준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제한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다 세분화하여 ‘9세 미만’의 용역제공시간을 축소·규정함(안 제22조제1항).
- 현행의 ‘1주일당’ 용역제공시간 제한에 더하여 ‘1일당’ 용역제공시간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제5항 및 안 제23조제1항·제4항).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제공시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제1항제3호·제4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신설>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0시간을, 1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생략)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 -----
--9세 이상부터 15세-----

-----35시간을, 1일에 7시간을-----.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1항 및 제2항을-----
-----.

-----.

⑤ 그 밖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

-----.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 설></u> <u><신 설></u> 3. (생략) ② (생략)	<u>④ 그 밖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0조(벌칙)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22조제1항·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용역 제공 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은 자</u> 4. <u>제22조제3항 또는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시간에 용역을 제공받은 자</u>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2조⁶⁾제1항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1일당’ 제한은 없고, 시간의 연장은 불가함.

- 또한, 제23조⁷⁾제1항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경우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1일당’ 제한은 없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및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음.⁸⁾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8) [참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평균 활동시간]

조사연도	15세 미만		15세 이상	
	1일 평균	1주 평균	1일 평균	1주 평균
2018년	6.2시간	22.8시간	6.7시간	24.8시간
2020년	4.0시간	13.4시간	5.3시간	18.2시간
2022년	3.9시간	11.4시간	5.1시간	18.8시간

*2020년 및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2023. 2.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의 대중문화예술인 중 용역제 공시간 제한의 필요성이 더 큰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별도의 ‘1일당’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일당’ 제한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하루에 집중적인 용역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청소년의 학습권·휴식권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이와 같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제공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직접적인 제재수단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9세’ 미만의 경우 용역제공시간이 1주일에 30시간 및 1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9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5시간, ‘15세 이상’의 경우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1일’에 각각 7시간 및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들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9) 현행법 제24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계약’ 등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6호는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계약’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위와 같은 ‘용역제공시간’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제한과 관련 하여 연령 구분의 세분화, ‘1일당’ 제한 및 벌칙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수면권·휴식권 등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미국(캘리포니아州)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용역 제공시간을 학기 중에는 1일 최장 6시간, 학기 중이 아닐 때에는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영국도 9세 이상에 대하여 1일 최장 5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용역제공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 구분 또한 12세·9세·6세·2세 등으로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때에도 개정안에 공감할 수 있음.¹⁰⁾

○ 다만, 관련 업계¹¹⁾에서는 연령 구분을 세분화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 행정상 업무의 가중 및 여러 혼란이 우려되고, 일일 단위 상한을 추가하는 것은 제작일수가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학교 결석 일수가 증가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시간을 어긴 것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업계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현행법령의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업계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

10) 관련 해외사례는 [참고5] 자료 참조

11) 관련 협·단체의 상세 의견은 [참고1] 자료 참조

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상황¹²⁾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은 ‘9세’가 아니라 ‘12세’를 기준으로 하는 용역제공시간 제한을 추가하고, 12세 미만, 12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이상으로 나누어 1주 단위 시간제한과 1일 단위 시간제한을 각각 다르게 하면서 현행 보다는 1주 단위 및 1일 단위 모두에서 또는 1일 단위에서 시간이 줄어들게 하고, 구체적인 용역 시간의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아울러, 벌칙 신설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역제공시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필요성에도 동의하나, 이것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기회 축소뿐 아니라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규제 신설에 대하여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2) [참고 : 소속 연습생 세부 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인력 수	연령대				
		만9세 미만	만10~12세	만13~15세	만16~18세	만19세 이상
전 체	1,170	10	38	121	285	716
연기자	293	0	0	8	42	242
가 수	752	4	32	105	226	384
방송인	112	6	6	7	17	77
기 타	13	0	0	0	0	13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2023. 2.

- 이에 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시정권고 후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완화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¹³⁾한 대안에 대하여 당시 법제사법위원회¹⁴⁾의 심사과정에서는 1일 단위 시간제한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제한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대안이 소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이후 소위원회¹⁵⁾ 심사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위 대안은 소위원회에 계류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종합하면**,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1일당’ 용역제공시간 제한과 ‘9세’ 미만의 용역제공시간 제한을 추가하면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수면권·휴식권 등

13)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 4. 21.(다만, 법사위 소위 계류 후 임기만료로 폐기)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대안]

현행		개정안
~ 12세 미만	1주 35시간	1주 25시간 (1일 최대 6시간)
12세 이상 ~ 15세 미만		1주 30시간 (1일 최대 7시간)
15세 이상 ~ 19세 미만	1주 40시간 *1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1주 35시간 (1일 최대 7시간) *1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

14)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3. 7. 17.

15) 제410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3. 9. 11.

보장 강화 필요성과 함께 관련 업계의 반대 의견, 업계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신탁(안 제25조의2)

가. 개정안 요지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친권자·후견인이 용역 보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¹⁶⁾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신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6)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5조¹⁷⁾에 따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독자적으로 용역제공에 따른 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기획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계약상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를 부모 등이 지급받아 관리하는 비율이 4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친권자·후견인이 용역 보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본인의 용역제공 대가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계약 상의 보수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관계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¹⁸⁾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합리적으로 운용·이용하기 어려운 자가 전문가 등에게 이를 신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미국의 '쿠건법'¹⁹⁾ 등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개정안과 같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다만,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개정안은 보수의 지급에 대한 법정 대리인과 당사자간의 분쟁에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방송협회**는 개정안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그 의무의 주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²⁰⁾ 개정안 심사 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8)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탁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19) 1939년 ‘캘리포니아 아동연기자 보호 헌장(California Child Actor’s Bill)’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쿠건법’을 도입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용역계약을 한 자에 대해 수익의 15%를 ‘쿠건계좌’에 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기타 내용은 [참고3] 자료 참조

20) 관련 협·단체의 상세 의견은 [참고1] 자료 참조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1

관련 협·단체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 (24.12.23.)	(청소년 의학검사 등 지원) - 대중문화예술인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사업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는 표준계약서 등 여러 제도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분쟁을 부추길 우려 (청소년 용역제공시간 제한, 벌칙) - 동 개정안은 제작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며, 대중문화예술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이 가능한 업종이고 근로자와는 성격이 다른바 그들의 지위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바라볼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인의 보호를 위배할 소지 -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되는 경우 원격지 촬영 등 진행할 수 없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보수의 실태) - 동 개정안은 보수의 지급에 대한 법정 대리인과 당사자간의 분쟁에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임 - 분쟁발생 시, 사업자는 지급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 (기타) -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업자의 의무만을 늘리는 법안에 반대 입장이며, 이는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생각됨 -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관계를 '갑'과 '을'로 보는 시선과 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법적 규제는 자제해주길 바람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가령 프로게이머와 같이 시간에 구애없이 게임을 하며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재능을 키우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야하며, 대중문화예술인들 또한 자신의 재능과 자질의 충분히 발휘해서 활동하는 영역임
한국연예 제작자협회 (24.12.23.)	(청소년 의학검사 등 지원) -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안보다는 동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치료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조율 등 협조해야한다' 등으로 수정될 필요 - 또한 사업자에게 재정 부담(선지급)을 주는 경우, 정산내역에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나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개정안과 같이 개정이 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필요 (청소년 용역제공시간 제한, 벌칙)

	• 9세 미만 등 15세 미만과 차등을 두어 개정한 입법 목적은 수긍 - 다만, 1주일 용역 제공 시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가중할 우려 • 1일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할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제공일수(제작일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제작업자 등에게 비용증가(부담)로 작용 - 또한, 제작일수가 증가하게 되면, 청소년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날도 증가하여 오히려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
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 (‘24.12.23.)	(청소년 의학검사 등 지원) • ‘심리적·육체적 건강 악화’ 및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의 표현이 다소 모호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건강 악화’로 보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함 • 또한,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한국방송 협회 (‘24.12.23.)	(종합) •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임 (청소년 의학검사 등 지원) • 현행법에 이미 관련 의무가 다수 규정되어 있으며, 방송사업자도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행 대중문화산업법에서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법 제7조제2항제4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특별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 체결 시,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법 제21조제1항)있고, 현저히 불리한 계약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제24조) 하고 있음 •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제작 현장에서 다수 규정들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 • 개정안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때문에 그 해석을 두고 당사자간 법적분쟁을 양산할 우려 • 개정이 불가피한 경우 그 주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한정 (청소년 용역제공시간 제한, 벌칙) • 1일 용역제공시간 제한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정임 - 개정안과 같이 제한하는 경우 오히려 촬영일수가 증가하여 역으로 학습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아울러, 동 개정안에서 ‘용역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수많은 종류의 대중문화예술 제작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임 - 용역제공 시간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세부사항으로 위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도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 청소년 연령 세부화 입법 실익이 크지 않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청소년기본법」 상, 범위(9~24세) 내에서 대부분 19세(또는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분류하며, 연령 세분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등 형벌 관련 법규 외에는 15세 미만자를 다시 세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또, 연령을 세분화하여 제한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9세 미만 출연자들을 기피할 가능성 •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유아는 6세 미만, 아동은 13세 미만,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연령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보수의 실태) • 개정안과 같이 개정 또는 보완되더라도, 그 의무 주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한정될 필요
한국음악 레이블협회 (’24.12.24.)	(청소년 의학검사 등 지원) •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검사나 치료를 강제할 수 없는바, 본인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 •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과 사업자가 선부담한 비용을 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완될 필요 (청소년 용역제공시간 제한, 벌칙) • 9세 미만 등 15세 미만과 차등을 두어 개정한 입법 목적은 수긍 - 다만, 1주일 용역 제공 시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가중할 우려 • 1일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할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제공일수(제작일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제작업자 등에게 비용증가(부담)로 작용 - 또한, 제작일수가 증가하게 되면, 청소년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날도 증가하여 오히려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 • 강제로 제한시간을 초과하거나 심야 제한을 어기면서 용역을 부당하게 제공받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간(대) 기준을 어긴 현상만을 기준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보호법익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제재 - 가령, 예술인이 촬영일수를 줄이기 위해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이더라도 사업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업계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보수의 실태) • 별도의 이견 없음

참고2

일반국민 대상 건강검진 시행 관련 규정

법률명	조문 내용
「건강검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참고3

특정인에게 의학적 검사나 치료를 지원하는 유사입법례

법률명	조문 내용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참고4

청소년 용역제공시간 관련 해외사례

국가	용역제공시간 및 휴식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아동노동법 중 제9장 (연예산업에서 아동의 노동 관련)	• 생후 15일-6개월 미만: 9:30-11:30 및 14:30-16:30 시간대에만 1일 최장 20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2시간 • 6개월-2세 미만: 1일 최장 2시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4시간 • 2세-6세 미만: 1일 최장 3시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6시간 • 6세-9세 미만: 학기 중 1일 최장 4시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8시간(3시간 학업, 1시간 휴식 포함) 학기 중이 아닌 경우 6시간까지 연장 가능(1시간 휴식 포함) • 9세-16세 미만: 학기 중 1일 최장 5시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9시간(3시간 학업, 1시간 휴식 포함), 학기 중이 아닌 경우 7시간까지 연장 가능(1시간 휴식 포함) • 16세-18세 미만: 학기 중 1일 최장 6시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10시간(3시간 학업, 1시간 휴식 포함). 학기 중이 아닌 경우 8시간까지 연장 가능(1시간 휴식 포함)
캐나다 (온타리오)	• 영상 또는 시청각 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 생후 15일-3세 미만: 20분 이상 휴식 후, 연속 15분 • 3세-6세 미만: 15분 이상 휴식 후, 연속 30분 • 6세-12세 미만: 10분 이상 휴식 후, 연속 45분 • 12세-16세 미만: 10분 이상 휴식 후, 연속 60분 • 16세-18세 미만: 5분 이상 휴식 후, 연속 60분
프랑스 *노동법, 노동협약	• 생후 6개월 미만: 1일 최장 1시간, 연속하여 30분 이하, 1주 최장 1시간 • 6개월-3세 미만: 1일 최장 1시간, 연속하여 30분 이하, 1주 최장 2시간 • 3세-6세 미만: 1일 최장 2시간, 연속하여 30분 이하, 1주 최장 3시간 • 6세-12세 미만: 학기 중 1일 최장 3시간, 연속하여 1시간 30분 이하, 1주 최장 4시간 30분, 학기 중이 아닌 경우 1일 최장 6시간, 연속하여 2시간 이하, 1주 최장 12시간 • 12세-16세 미만: 학기 중 1일 최장 4시간, 연속하여 2시간 이하, 1주 최장 6시간, 학기 중이 아닌 경우 12세 이상 13세 미만은 1일 최장 7시간, 연속하여 3시간 이하, 1주 최장 15시간, 14세 이상 16세 미만은 1일 최장 7시간 연속하여 3시간 이하, 1주 최장 18시간
영국 *어린이청소년 법, 교육법, 어린이노동보 호법 중 '청소년 예술인 노동' 관련	• 5세 미만: 1일 최장 2시간, 연속 공연 최장 30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5시간 • 5세-9세 미만: 1일 최장 3시간, 연속 공연 최장 2시간 30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8시간 • 9세 이상: 1일 최장 5시간, 연속공연 최장 2시간 30분, 작업현장 상주시간 최장 9시간 30분 • 연속하여 4시간-8시간 동안 작업현장에 있는 경우 적어도 식사시간 45분, 휴식시간 15분이 주어져야 함 • 연속하여 8시간 동안 작업현장에 있는 경우 추가 휴식시간 15분이 주어져야 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5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용역보수 신탁 관련 해외사례

<표> 미국의 주별 청소년 보수의 신탁계좌(Coogan Account) 관련 규정_Sag Aftra 발췌

주	규정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 *아동연기자 보호헌장	캘리포니아의 부모는 '쿠건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모든 미성년자는 수입의 15%를 쿠건 계좌라는 신탁 계좌에 보관해야 함
뉴욕	뉴욕의 부모는 UTMA 또는 UGMA 규정(수탁형 계좌)을 준수하는 신탁계좌를 개설해야 함
일리노이	일리노이에서 일하는 자녀의 부모는 Blocked Trust Account(차단된 신탁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자녀 수입의 15% 이상을 계좌에 입금해야 함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 루이지애나의 부모는 모든 주, 모든 은행에서 Blocked Trust Account를 개설해야 함 - 뉴멕시코의 부모는 자녀가 각 고용계약 당 \$1000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Blocked Trust Account를 개설해야 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